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
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배경훈 (부총리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전

1. 의결주문

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기관 등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우수사례를 발굴·확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20958호, 2025. 5. 27. 공포, 11. 28. 시행)됨에 따라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 촉진·권익 보호·경력단절 예방 등에 대한 사례를 공모 또는 추천을 통해 발굴하고, 발굴된 사례 중 우수사례를 선정·포상할 수 있으며, 우수사례로 선정된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음

4.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부처 합의 전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전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3(우수사례의 발굴·확산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 13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례를 공모 또는 추천을 통해 발굴하고, 발굴된 사례 중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1.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 촉진
2. 여성과학기술인의 권익 보호
3.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
4. 여성과학기술인의 일·생활 균형을 위한 조직문화 조성
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사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홍보할 수 있다.

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사례로 선정된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6조의3(우수사례의 발굴·확산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례를 공모 또는 추천을 통해 발굴하고, 발굴된 사례 중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.</u> <u>1.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 촉진</u> <u>2. 여성과학기술인의 권익 보호</u> <u>3.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</u> <u>4. 여성과학기술인의 일·생활 균형을 위한 조직문화 조성</u> <u>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사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홍보할 수 있다.</u> <u>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사례로 선정된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문화과	
연 락 처	(044) 202 - 4841